

EMIR REFIT: 대체투자펀드(AIF)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법률적 또는 전문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EMIR 또는 EMIR REFIT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 또는 고려 사항에 대한 지침 또는 설명이라 간주될 수 없고 그러한 지침 또는 설명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 참가자는 자신의 특정한 상황과 규제 의무의 맥락에서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률 및 기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ISDA는 ISDA의 문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MIR REFIT 이란 무엇입니까?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규제 적합성 및 성과 프로그램(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EMIR REFIT”)의 일환으로 EMIR에 따른 기존 요건들을 단순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준수 비용이 불균형적인 경우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EMIR 규정(Regulation 648/2012)의 특정 조항들을 직접 수정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MIR REFIT 최종 규정 텍스트는 2019년 5월 28일에 유럽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었습니다¹.

EMIR REFIT은 왜 대체투자펀드(AIF)와 관련이 있습니까?

EMIR REFIT은 EMIR 상 금융회사(financial counterparty, “FC”)로 간주되는 대체투자펀드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AIF”²)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EMIR 상 많은 의무(특히 의무청산 및 비청산 증거금 요건)의 적용이 EMIR 상의 FC 해당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EMIR REFIT에 앞서 EMIR는 AIFMD에 따라 인가되거나 등록된 EU AIFM이 관리하는 모든 EU 또는 비 EU AIF를 FC로 분류했습니다³. EMIR REFIT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자를 포함하도록 그 FC 정의를 확장합니다:

- 매니저의 위치 또는 AIFMD에 따른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EU AIF 및
- 해당되는 경우, 어떤 펀드의 EU에서 설립된 AIFM.

다만, 개정된 FC 정의는 (i) 하나 이상의 직원 주식 매입 계획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되거나 (ii) 증권화 특수 목적 기업(securitisation special purpose entities, “SSPE”)⁴인 AIF를 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¹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9.141.01.0042.01.ENG&toc=OJ:L:2019:141:TOC

² AIF는 EU AIF 또는 비 EU AIF일 수 있습니다. “AIF”는 AIFMD 4조 (1)항 (a)에서 공모펀드(UCITS)가 아니면서 투자자를 위해 정의된 정책에 따라 투자를 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집합 투자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³ AIFMD 37조에 의거한 허가(passport)의 범위에 따라 현 체제는 Directive 2011/61/EU(“AIFMD”)에 따라 인가된 비 EU AIFM이 관리하는 AIF에도 적용됩니다.

⁴ AIFMD 2조 (3)항 (g)에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확대된 FC의 정의에 새로 포함된 AIF는 EMIR에 따른 여러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FC (small FC)”로 간주되지 않은 한) 청산 의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건, (EMIR REFIT에 의해 개정된) 거래 보고의무 및 EMIR상의 당사자 분류에 기초한 기타 위험 완화 요건(risk mitigation requirements) 특정 항목들에 따른 의무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EMIR REFIT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도입합니다:

- 청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범주의 “소규모 FC (small FC)”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요건은 여전히 적용). 이 새로운 분류는 관련 AIF의 장외 파생 상품 거래 활동 규모가 모든 청산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⁵.
- 관련 AIF가 거래당사자인 장외 파생상품 계약의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할 AIFM의 책임⁶.

비 EU 대체투자펀드(AIF)에도 관련될까요?

예. 위에 설명된 EU AIF와 관련한 FC 정의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EMIR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비 EU AIF의 동등성 분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련 EMIR 규정의 적용을 받는 EU 당사자가 EMIR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비 EU AIF와 거래하는 경우, EMIR 제 4조(의무 청산) 및 제 11조(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 완화 요건)는 이미 EU 당사자의 의무가 비 EU AIF의 동등성 분류(해당 AIF가 EU에서 설립된 것처럼 취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EMIR REFIT가 발효된 후 개정 FC 정의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즉, 비 EU AIFM이 관리하는) 모든 비 EU AIF가 (직원 주식 매입 계획 또는 SSPE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FC”와 동등한 것으로 분류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가 제한적인 비 EU AIF는, EMIR REFIT에 의해 새로 도입된 “소규모 FC (small FC)” 분류에 따라 모든 청산 기준액 미만의 FC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산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EMIR의 적용을 받는 EU 당사자가 EMIR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비 EU AIF와 거래할 때 해당 EU 당사자는 이제 (a) 청산 의무 (해당 AIF가 “소규모 FC (small FC)”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b) 변동증거금 및 잠재적으로 개시증거금의 교환 요건을 포함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건 및 (c) EMIR상의 당사자 분류에 기초한 기타 위험 완화 요건 특정 항목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직원 주식 매입 계획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된 AIF 또는 SSPE인 AIF와 관련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AIFMD에 의해 인가 또는 등록된 AIFM이 관리하는

⁵ 2019년 3월 28일자 ESMA 공개 성명(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esma70-151-2181_public_statement_on_refit_implementation_of_co_regime_for_fcs_and_nfcs.pdf)에 따라 AIF가 “소규모 FC (small FC)” 분류를 적용하려는 경우 EMIR REFIT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총 월말 평균 포지션을 계산해야 합니다.

⁶ 이는 EMIR REFIT 규정 발효 12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비 EU AIF 는 EMIR 상의 FC 로서 직접 포함되는 상태를 유지하므로 EMIR 에 따른 관련 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EMIR REFIT 규정은 2019 년 6 월 17 일에 발효됩니다. 위에 설명된 거래 상대방 분류 변경은 새로운 장외 파생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AIF 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AIF 와 관련된 FC 정의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EMIR REFIT 규정에 따른 당사자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AIF 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EMIR REFIT 규정 발효일에 ESMA 에 해당 펀드의 FC 또는 “소규모 FC (small FC)” 분류를 즉시 통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AIF 의 거래 상대방은 EMIR REFIT 발효 후 정확한 거래 상대방 지위 분류를 위해 해당 AIF 의 거래 상대방 지위 진술(counterparty status representation)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AIF 의 거래 상대방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MIR 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AIF 와 관련한 새로운 준수 의무와, 필요에 따라 AIF 거래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설립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법률가의 자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This Korean translation is for reference only. Although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translation, due to the differences in grammar and legal terminologies, the possibility that terms or words used in the Korean translation may have different meanings or connotations from the English original cannot be ruled out. Therefore, this Korean translation should not be relied upon by any person in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If there exists any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version and the English version, the English version should govern.

본 국문 번역본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본 번역본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문법 및 법률용어의 차이로 인해 국문 번역본에 사용된 용어 혹은 단어들이 영문 원본의 의미 혹은 함의와 다를 가능성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국문 번역본은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결정요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문본과 영문본간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